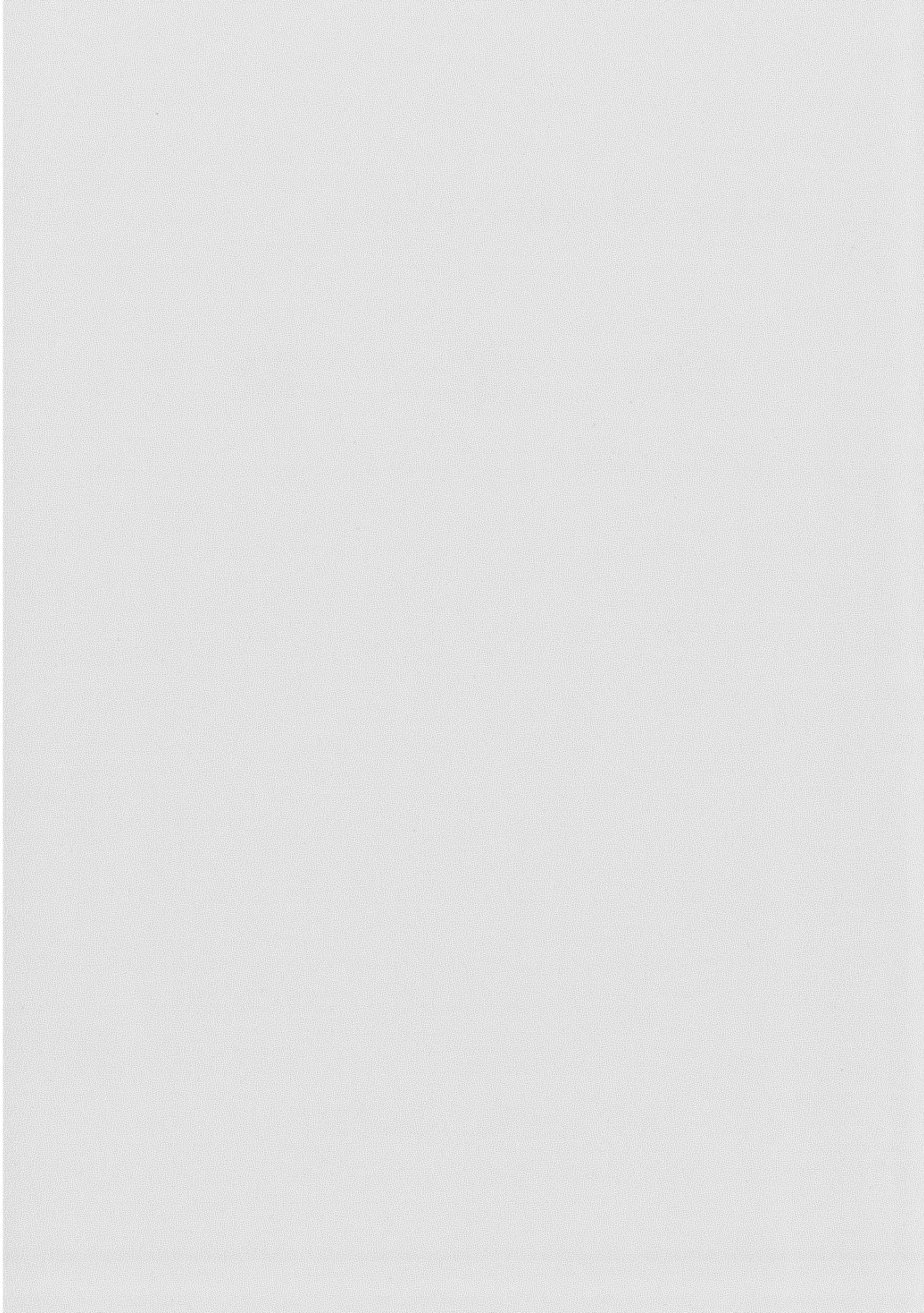


第12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1.3.26.~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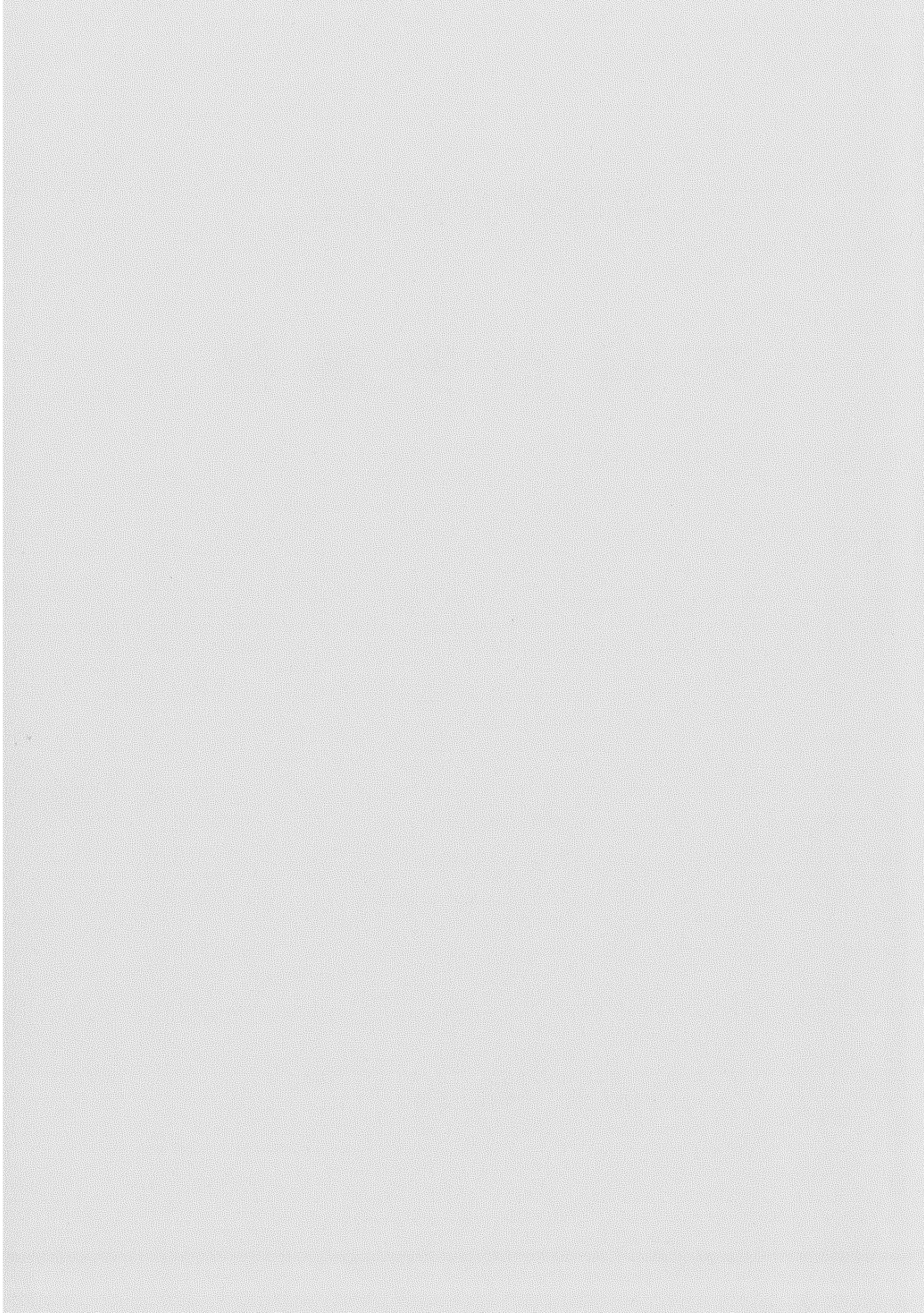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2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3
- II.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9
- IV. 부 록
 - 1. 의사일정13
 -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15
 - 3.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3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2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등이 있었기에 인사소개를 드립니다.

● 의장대리 송진하

(교육정보화과장 단상 앞으로 나옴)

금일 사회는 의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있었던 채수병 과장이 단양교육장으로 전임됨에 따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그 후임에 청주석교초등학교 교장선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으로 계셨던 박상환 교장선생님이 본청에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전직되었습니다.

집행청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예, 인사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감)

● 교육감 김영서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2001년 3월 1일자로 본청 간부에 대한 이

[제126회-제1차 본회의]

1. 경과보고

● 의장대리 송진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3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1-3호로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단재교육상조례 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송진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대리 송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

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3월 27일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11시 07분)

● 의장대리 송진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

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교 외 6개교에 교실 3,420㎡와 예성여교 외 5개교에 화장실, 계단실 등 1,337㎡를 증·개축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으로 청주남중 외 6개교에 다목적강당 6,270㎡, 충북공고와 영동고에 학생기숙사 4,064㎡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인 구 문의초구룡분교장의 부지 및 임야 10만7,743㎡, 건물 약 815㎡와 공작물 5종을 처분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송학중학교 건물 약 2,226㎡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대리 송진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본 위원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그 심사 결과를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님, 제가 조금 이 제안설명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우리 본청에서 이것을 기획하시느라고 애쓰신 그런 흔적이 있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추경이라든지 또는 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 먼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이렇게 재정법 77조, 시행령 84조, 이것에 의해서 사전에

[제126회-제1차 본회의]

이렇게 저희에게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과거와 같이 예산과 사업이 동시에 이것이 상정되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심의하는데 좀더 노력을 경주해서 충북교육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저 개인으로

다짐을 하면서, 더욱 저희 충북교육위원회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보태 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송진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3월 28일 (수요일) 10시 56분

議事日程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 56분 개의)

● 의장대리 송진하

금일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에서 부교육감과 과학실업교육과장께서는 충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회의장에서 나감)

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송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를 주관할 것

[제126회-제2차 본회의]

습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월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일 상정해서 계류되었다가, 3월 26일 이번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재차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설명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북학생상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시상부문 중 학생시상 부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간의 단재교육상 운영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볼 때,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심도있게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대리 송진하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11시 01분)

● 의장대리 송진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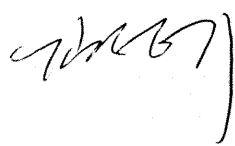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4. .

의 장 손 만 재 

부의장 송 진 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26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3. 26. ~ 3. 28.(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月 26日(月) (11:00)	<p>□ 開 會 式</p> <p>[第1次 本會議]</p> <p>1. 제12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기 : 2001. 3. 26. ~ 3. 28.(3 일간)</p> <p>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p> <p>□ 小委員會 活動</p> <p>- 조례심사소위원회</p>	
3月 27日(火)	<p>□ 現場訪問</p> <p>-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관련</p>	本會議 休會
3月 28日(水) (11:00)	<p>[第2次 本會議]</p> <p>1.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p> <p>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p> <p>※ 閉 會</p> <p>□ 懇 談 會</p>	

(별첨 2)

의안번호	제 126 - /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3. 28. (제 126 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3 . 17.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26-1
----------	-------

제출년월일 : 2001. 3.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득

○ 교실 증·개축	상당고외	6교	3,420 m ²
○ 화장실 증축	예성여고외	5 교	540 m ²
○ 연결통로	제천고외	1교	35 m ²
○ 계단실	영동고외	5교	630 m ²
○ 다목적강당 증축	청주남중외	6교	6,270 m ²
○ 학생기숙사 증축	충북공고외	1교	4,064 m ²
○ 창고, 등사실 증축	제천여고		132 m ²
○ 공작물(급수대)	제천고		2 식

□ 공유재산의 처분

○ 폐교재산 매각

· (구)문의초 구룡분교

-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 338번지 (학교용지)	11,173 m ²
- 위 지상건물 3동	814.26 m ²
- 위 공작물	5 종
-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산46-1 (임야)	96,570 m ²

○ 노후 건물 철거

· 송학중	교실	2,225.17 m ²
-------	----	-------------------------

3. 제안근거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명자료 : 별책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m,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7	10,531	7,197,850	5	4,560	3,532,620	12	15,091	10,730,470	
		기타	1	2식	29,200				1	2식	29,200	
	특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7	10,531	7,197,850	5	4,560	3,532,620	12	15,091	10,730,470
			기타	1	2식	29,200				1	2식	29,200
처분	계	토지	1	107,743	152,762				1	107,743	152,762	
		건물	1	814.26	121,765	1	2,225.17	276,942	2	3,039.43	398,707	
		기타	1	5종	13,196				1	5종	13,196	
	4. 매각	토지	1	107,743	152,762				1	107,743	152,762	
		건물	1	814.26	121,765				1	814.26	121,765	
		기타	1	5종	13,196				1	5종	13,196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처분	토지										
		건물				1	2,225.17	276,942	1	2,225.17	276,942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청주남중	건 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24-3	825	615,000	하반기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감	1쪽
2	제천동명초	"	제천시 명동 68	825	615,000	"	"	"	2쪽
3	제천동중	"	제천시 신백동 21	825	615,000	"	"	"	3쪽
4	음성삼성초	"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	825	689,830	"	"	"	4쪽
5	상 당 고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	1,465	1,108,539	상반기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	5쪽
6	오 창 고	"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	1,350	989,472	"	"	"	6쪽
7	예성여고	"	충주시 호암동 526-1	1,365	1,035,426	"	"	"	7쪽
8	제 천 고	"	제천시 청전동 162	760	598,651	"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8쪽
		공작물	"	2식	29,200	"	교육환경 개선	"	
9	제천여고	건 물	제천시 서부동 740	927	743,327	"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9쪽
10	영 동 고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	1,597	1,011,435	"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및 통학불편 해소 (기숙사)	"	10쪽
11	충북공고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3,067	1,711,000	"	실업고 운영 내실화 (기숙사)	"	11쪽
12	송 학 중	"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1,260	997,790	하반기	교육환경 개선	"	12쪽
계	12 교	토 지							
		건 물		15,091	10,730,470				
		공작물		2식	29,200				

처분대상 재산목록(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 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구)문의초 구룡분교	토 지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 338	11,173	58,993	상반기	폐교재산 매각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2-36 이 진 선	13쪽
		건 물	"	814.26	121,765	"	"	"	"
		공작물		5종	13,196	"	"	"	"
		임 야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산 46-1	96,570	93,769	"	"	천안시 동면 송연리 91-4 박 중 원	14쪽
2	송 학 중	건 물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2,225.17	276,942	하반기	노후건물 철거		15쪽
계	2 교	토 지		107,743	152,762				
		건 물		3,039.43	398,707				
		공작물		5종	13,196				
		계			564,665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몰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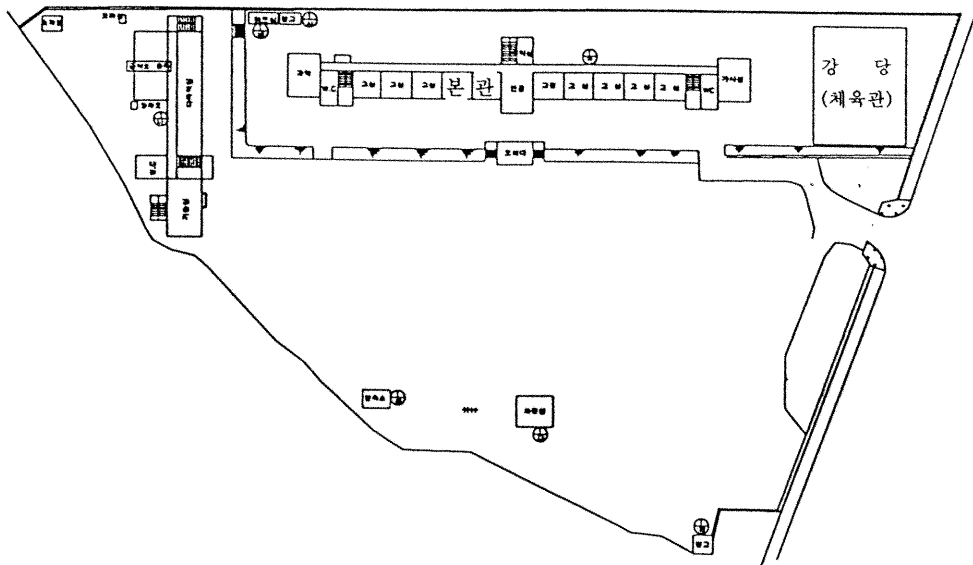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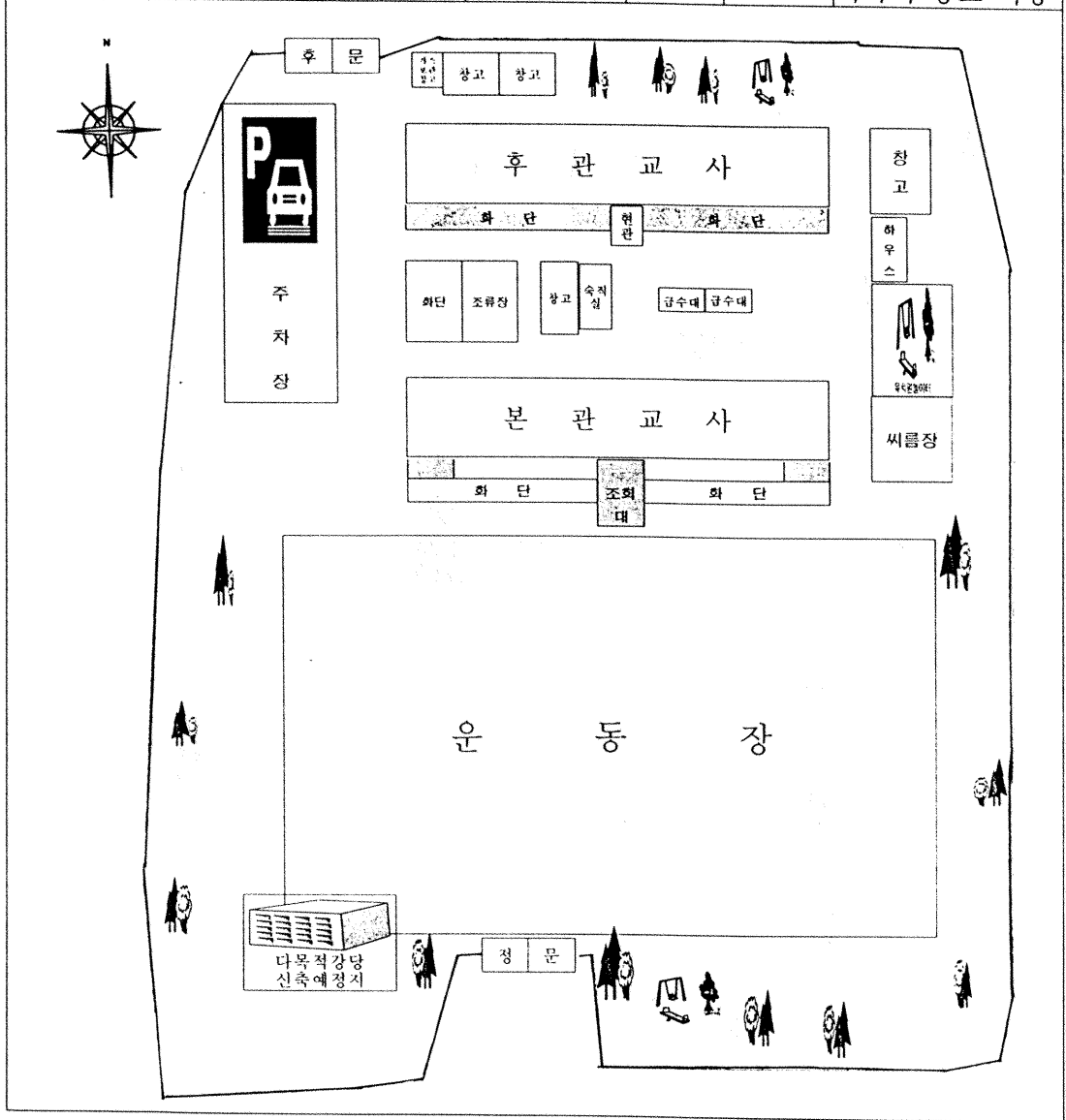
청주남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금 액 (천원)	사 유
다목적강당 (체육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24-3	철콘판	825	615,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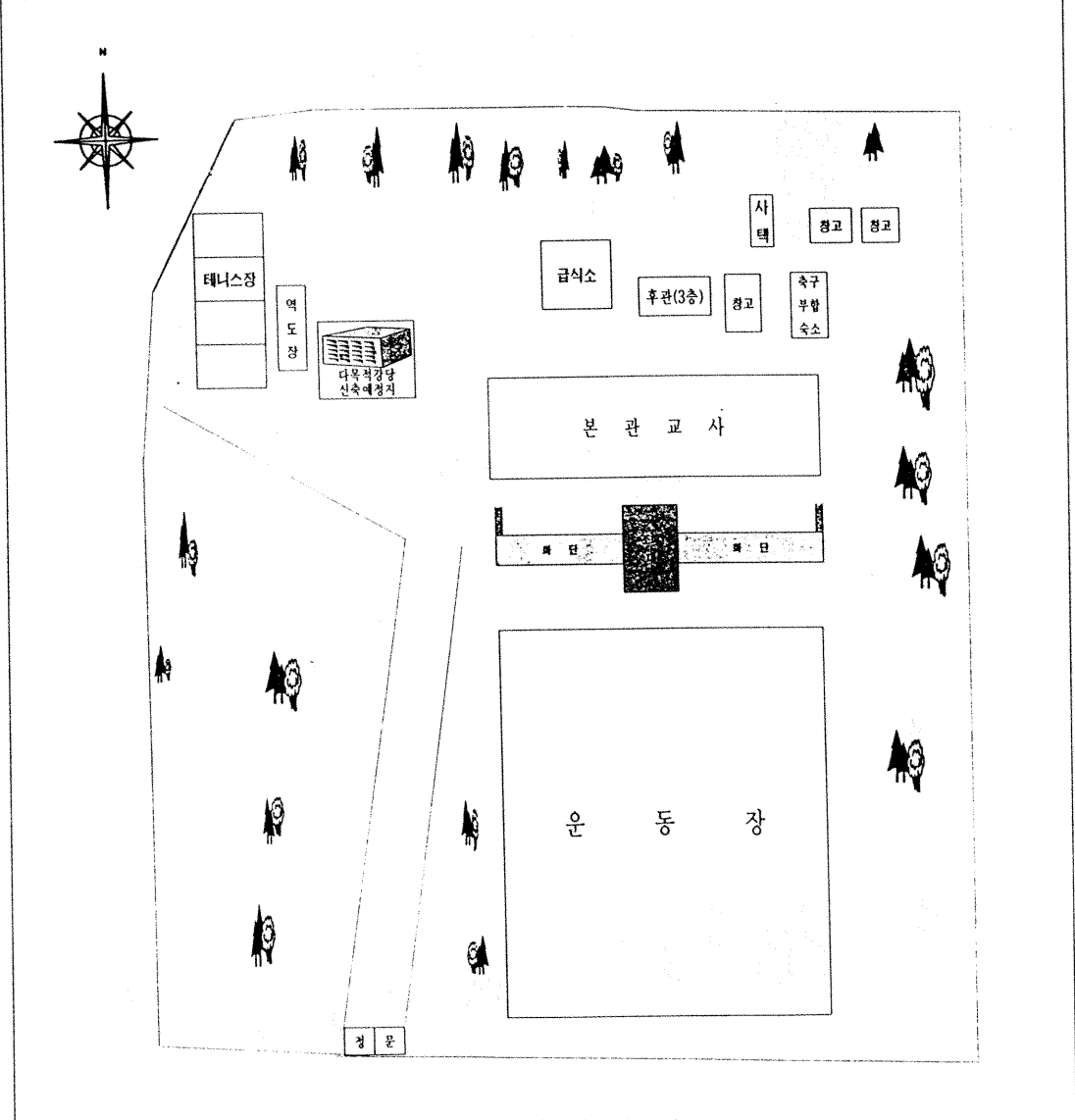
동명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다목적 강당 (체육관)	제천시 명동	68	철·콘·판	825	615,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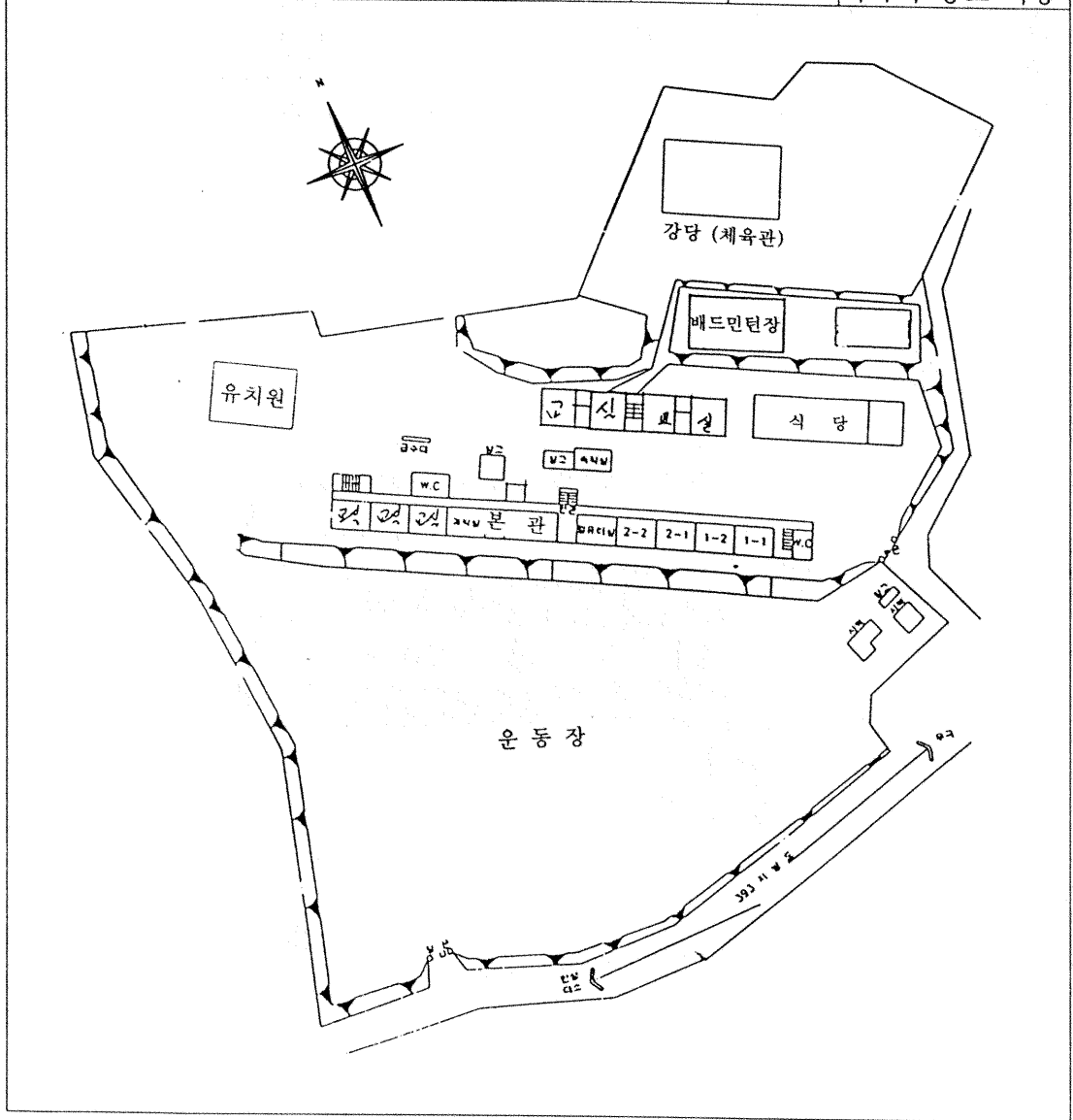
제천동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다목적 강당 (체육관)	제천시 신백동	21	철·콘·판	825	615,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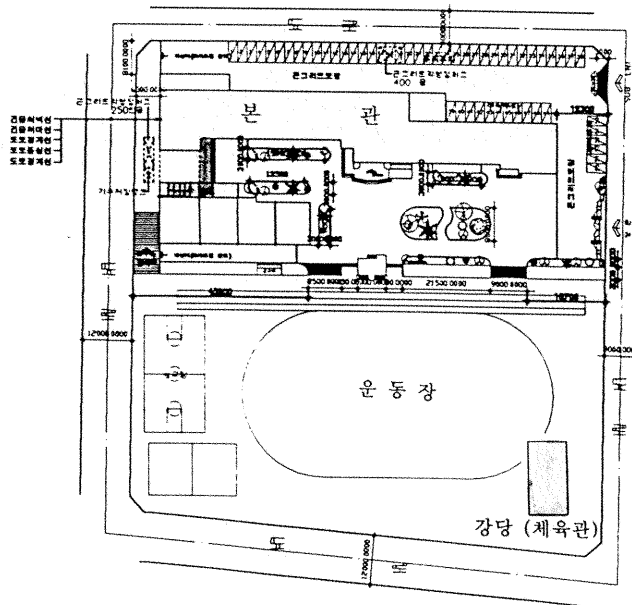
삼성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 강당 (체육관)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	철·콘·판	825	689,83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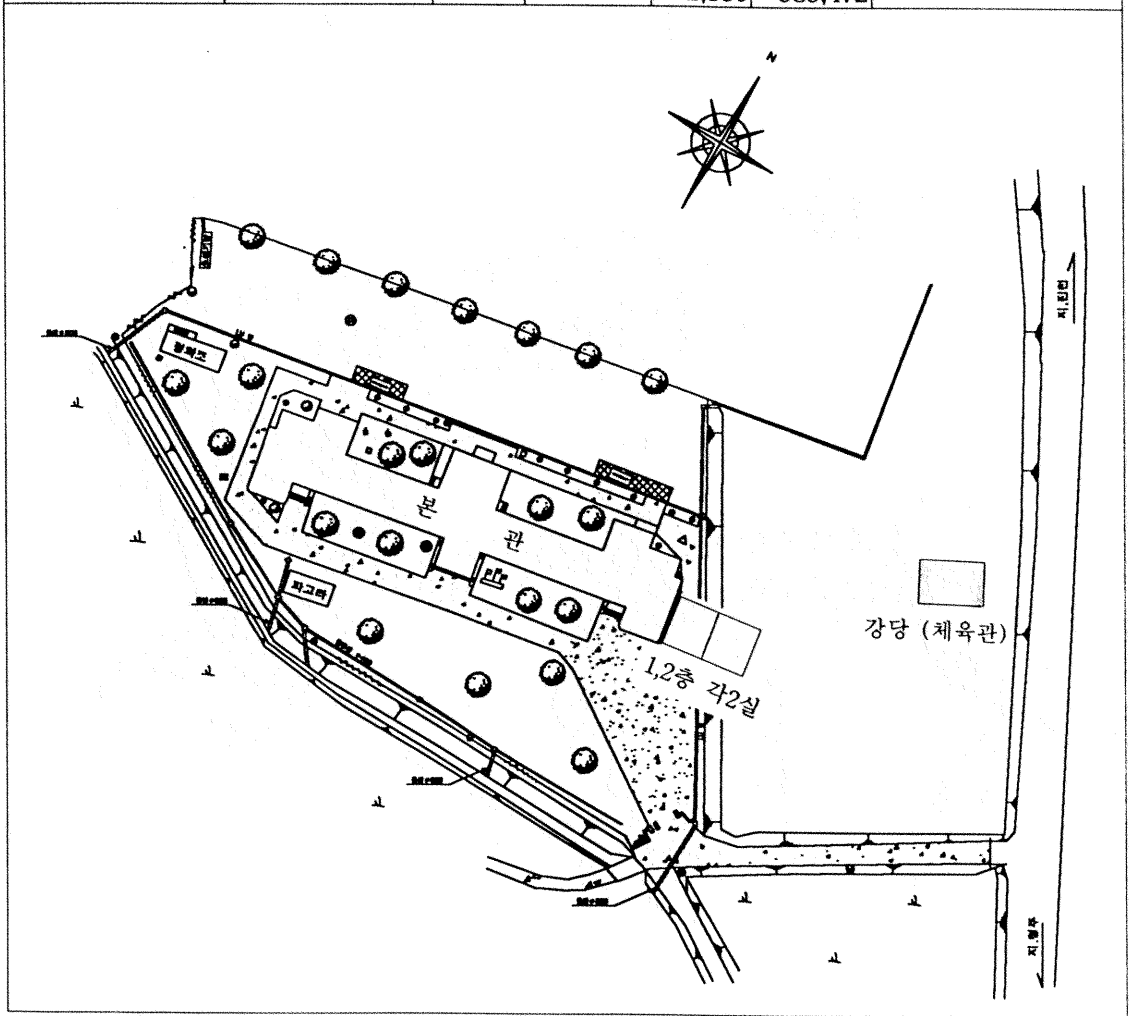
상당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금액 (천원)	사유
① 교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	철콘슬	360	254,439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계단실			"	45	28,300	"
③ 화장실			"	60	81,300	"
④ 연결통로			"	10	6,500	"
⑤ 다목적강당 (체육관)			철콘판	990	738,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계				1,465	1,108,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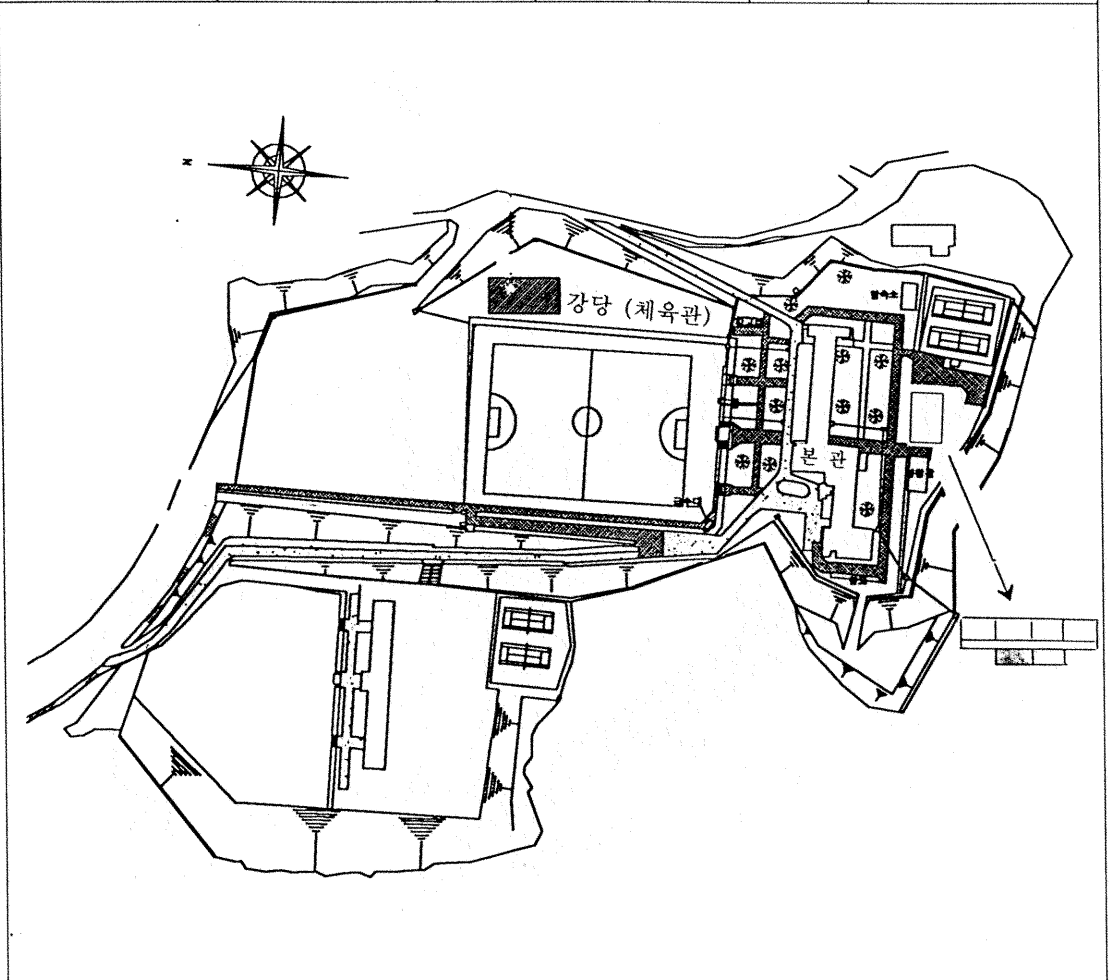
오창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① 교실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	철콘슬	360	251,472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다목적 강당 (체육관)			철콘판	990	738,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계				1,350	989,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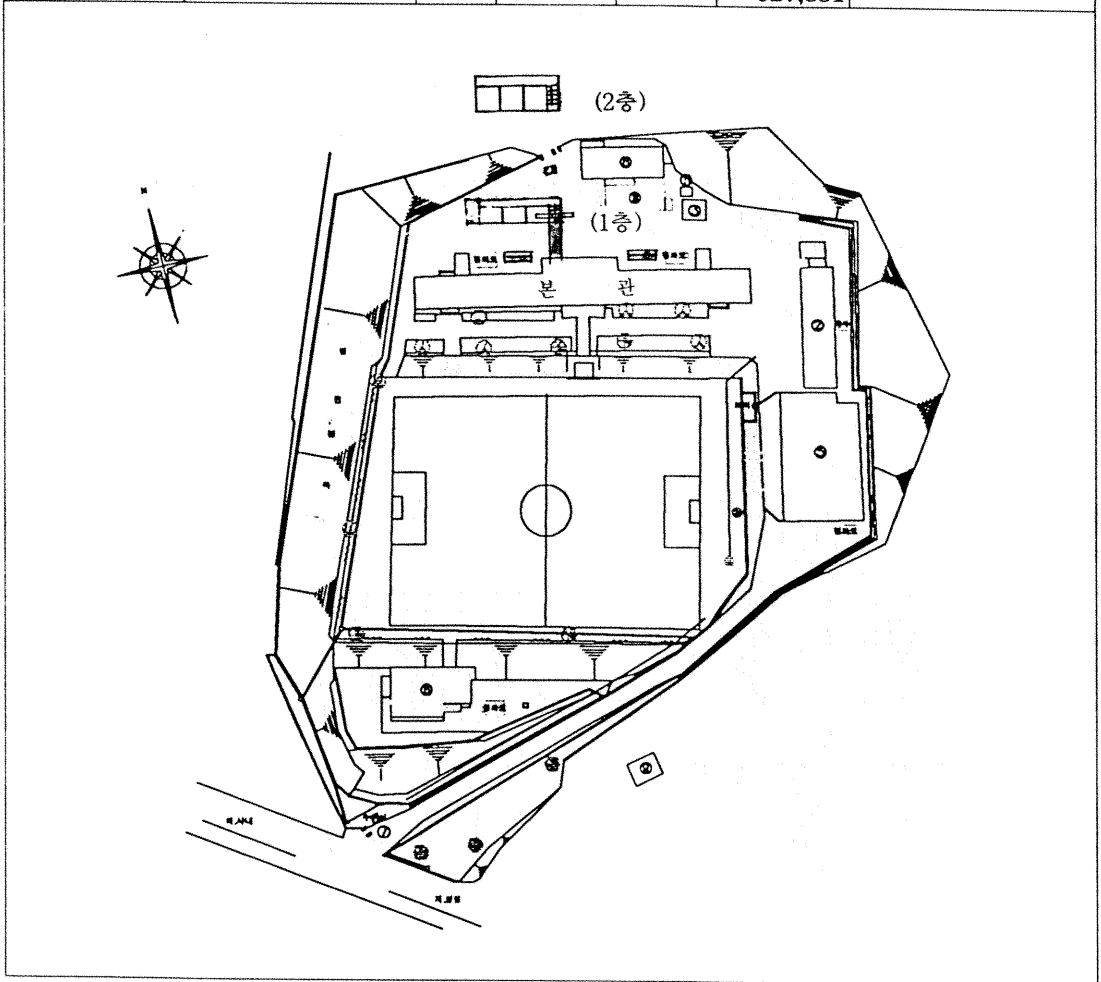
예성여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적 (㎡)	금 액 (천원)	사 유
① 교실	충주시 호암동	526-1	철콘슬	180	131,226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계단실			"	135	84,900	"
③ 화장실			"	60	81,300	"
④ 다목적 강당 (체육관)			철콘판	990	738,000	예·체능활동 및 다목적 용도 사용
계				1,365	1,035,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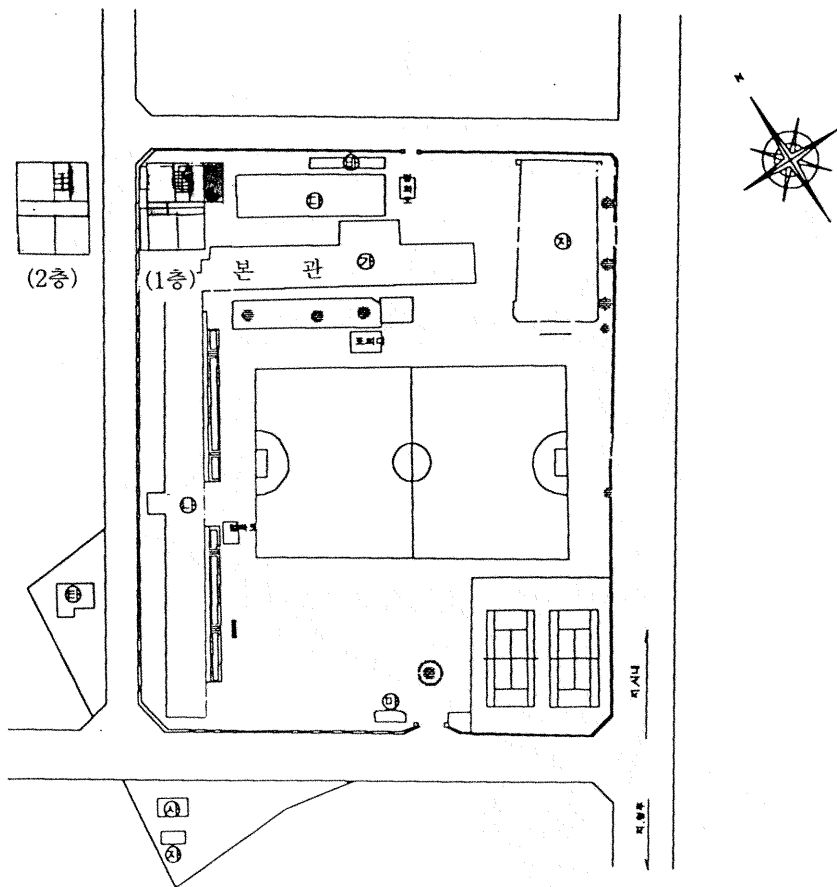
제천고 건물 및 공작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① 교실	제천시 청전동	162	철콘슬	540	416,201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계단실			"	135	84,900	"
③ 화장실			"	60	81,300	"
④ 연결통로			철 콘	25	16,250	"
⑤ 급수대			"	2식	29,200	"
계					627,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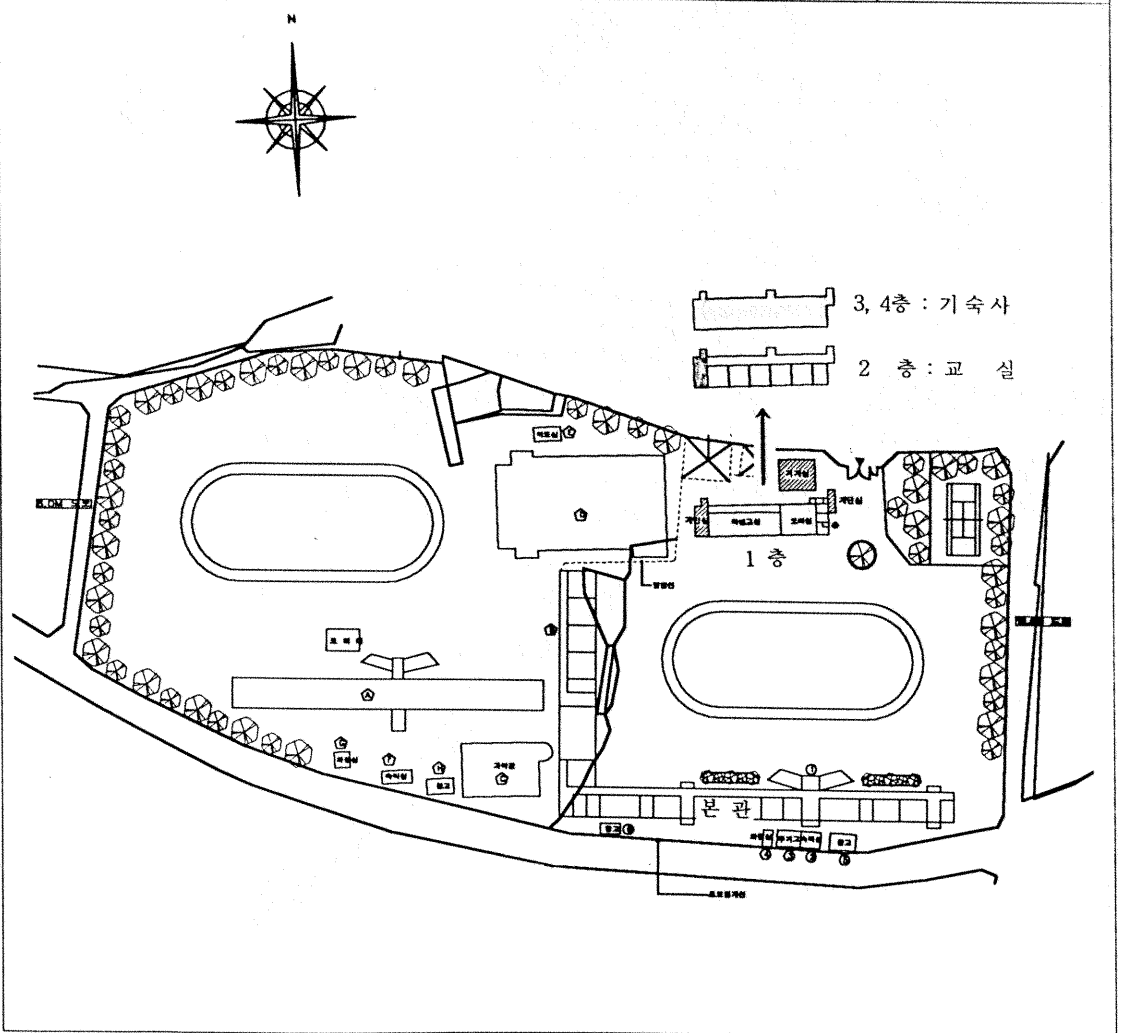
제천여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금액 (천원)	사유
① 교실	제천시 서부동	740	철콘슬	540	419,427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계단실			"	135	84,900	"
③ 화장실			"	120	162,600	"
④ 창고			시벽슬	66	38,200	"
⑤ 등사실			"	66	38,200	"
계				927	743,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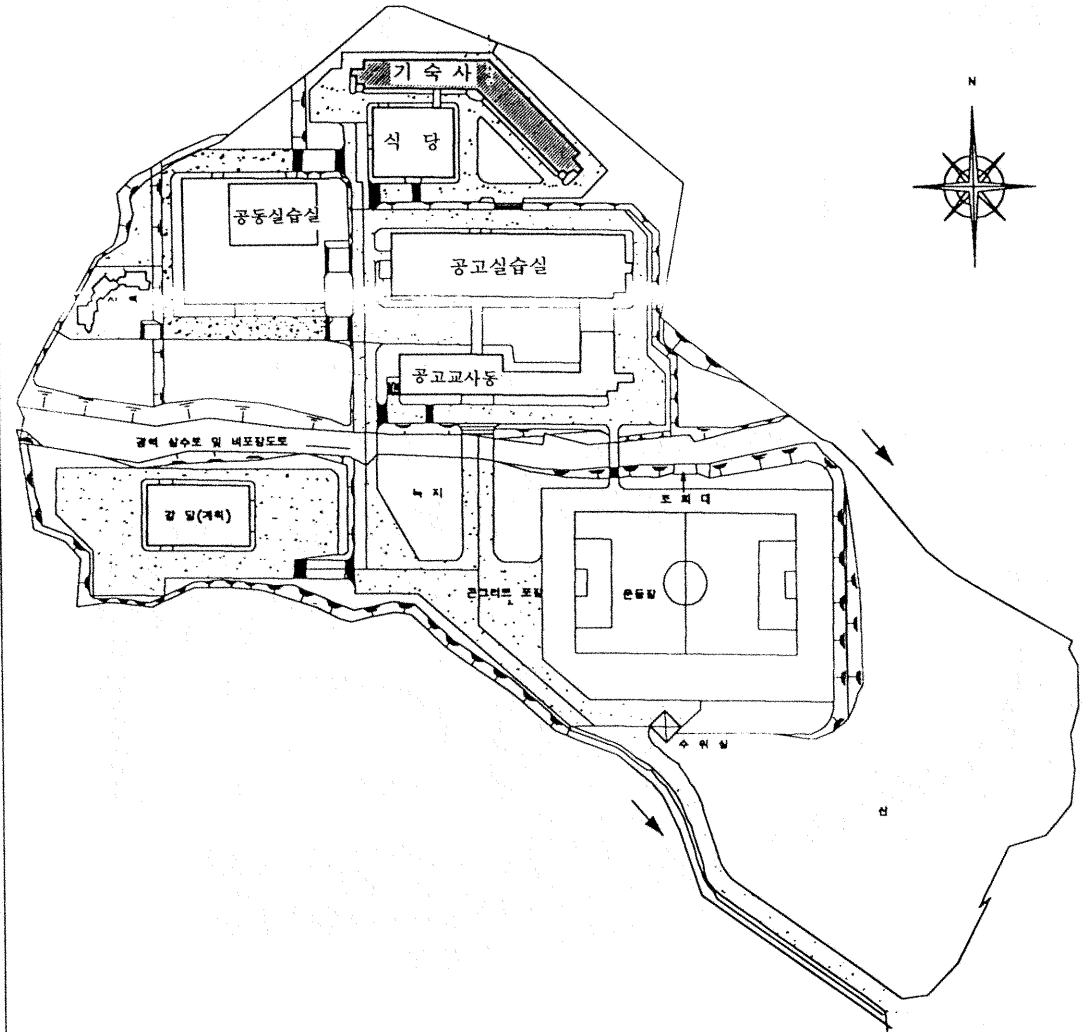
영동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① 교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	철콘슬	450	317,535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계단실			"	90	56,600	"
③ 화장실			"	60	81,300	"
④ 학생기숙사			"	997	556,000	통학불편 해소
계				1,597	1,01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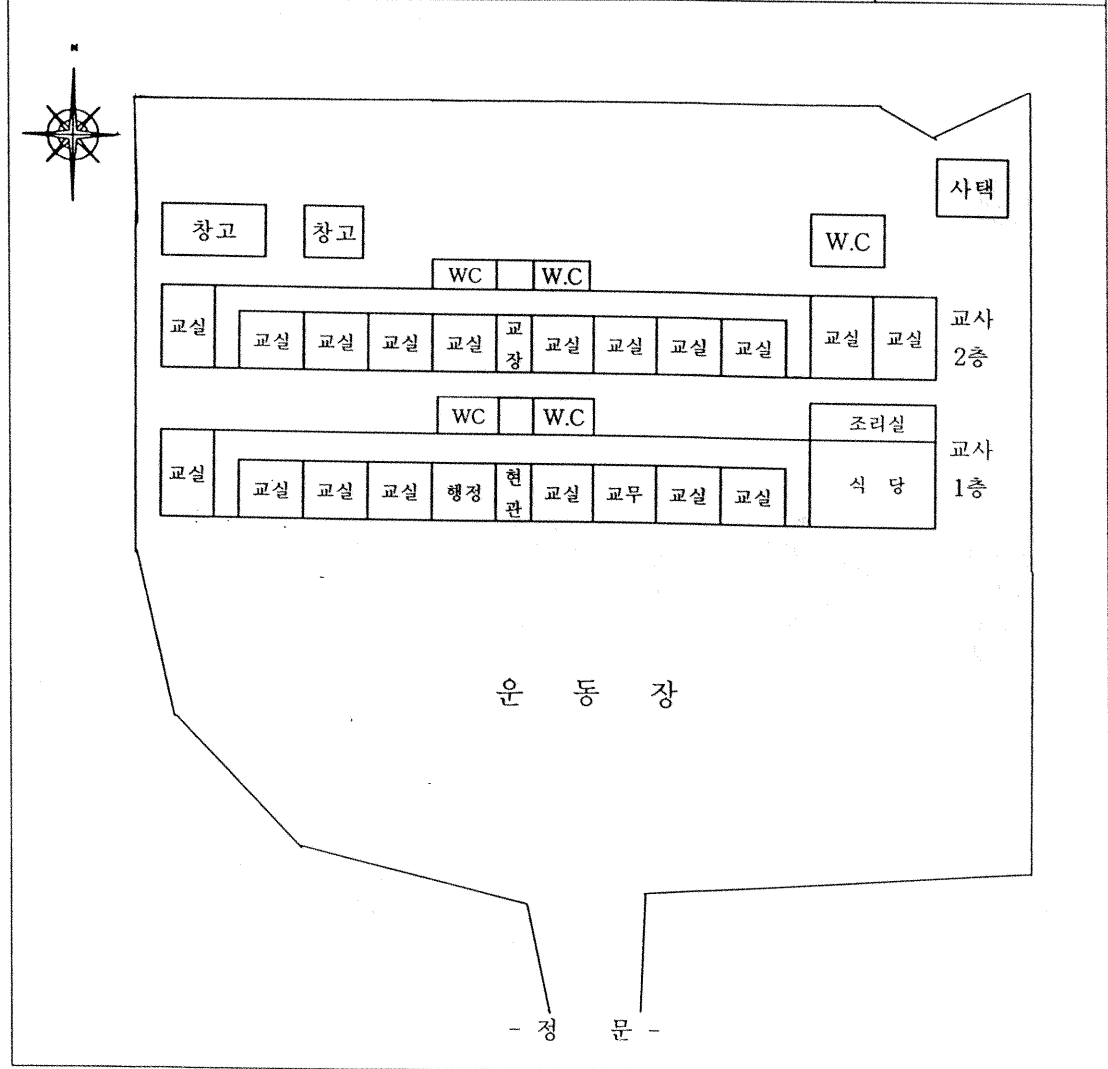
충북공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 조	면 적 (m ²)	금 액 (천원)	사 유
학생기숙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철콘슬	3,067	1,711,000	실업고 운영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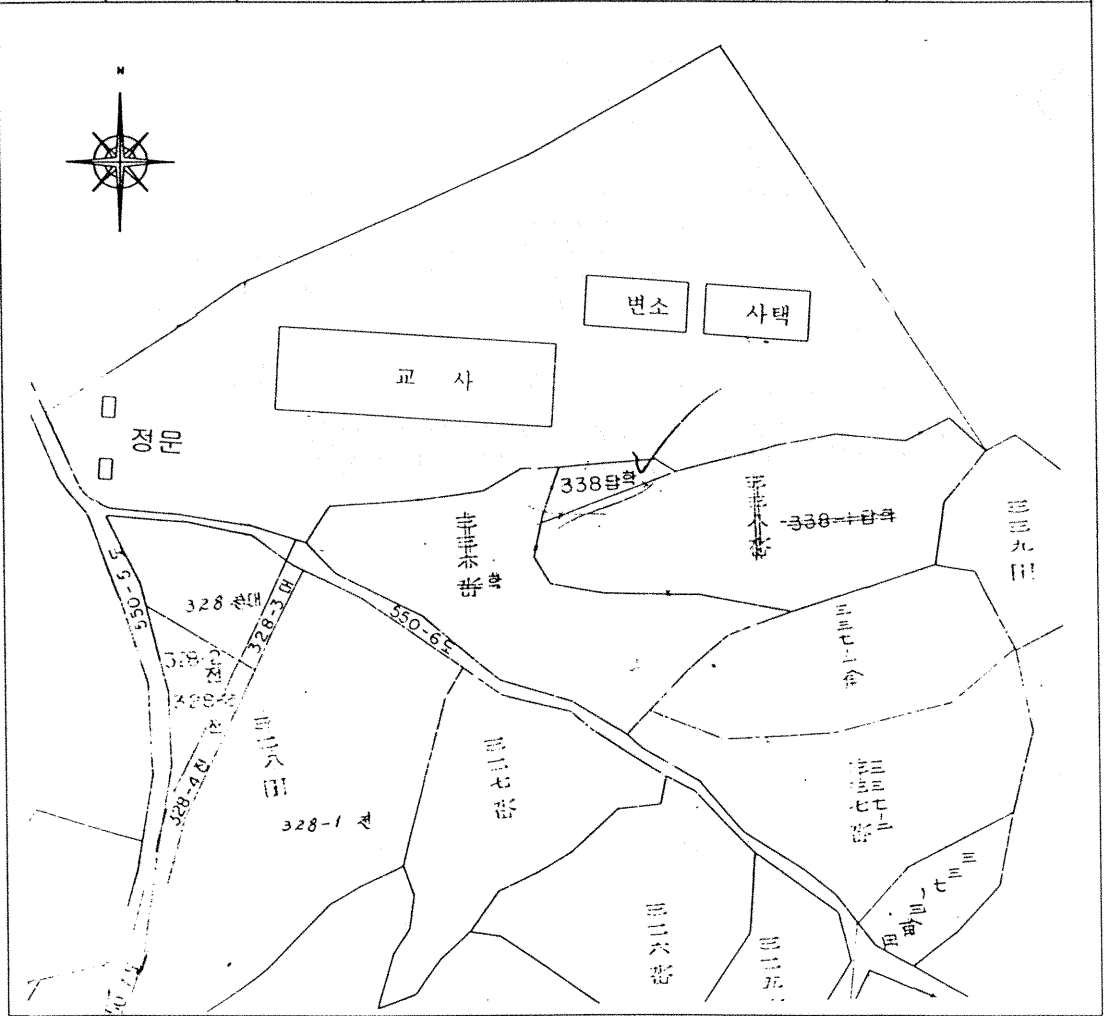
송학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금 액 (천원)	사 유
① 교 실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철콘슬	990	778,590	교육환경 개선
② 화장실			"	180	162,600	"
③ 계단실			"	90	56,600	"
계				1,260	997,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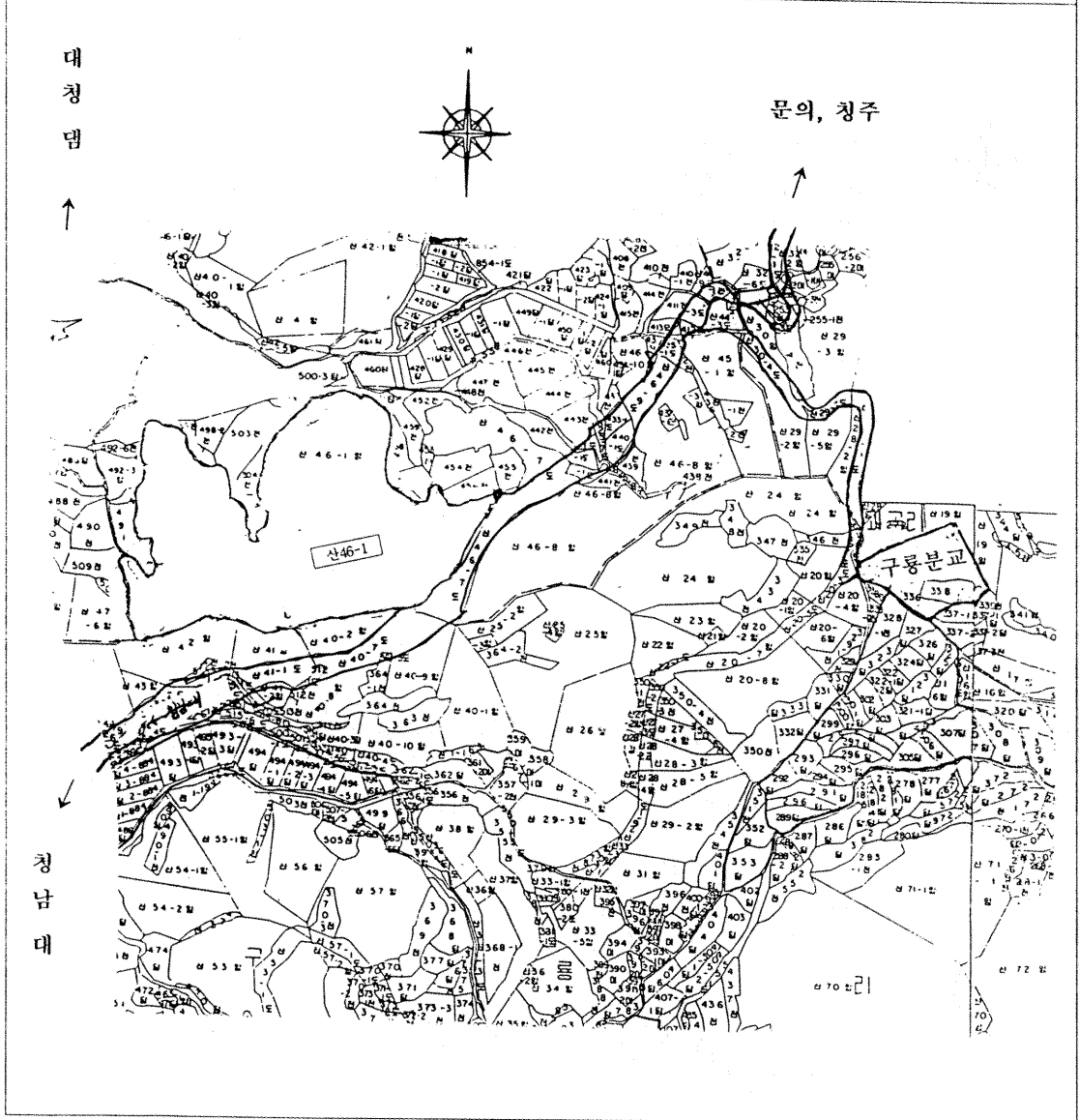
(구) 문의초 구룡분교 토지, 건물 및 공작물 처분 배치도

구분	용도	소재지	지목 (구조)	건축 년도	면적 (㎡)	처분금액 (천원)	사유
토지	학교용지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 338	학		11,173	58,993	폐교재산 매각 교육환경개선 재원 확보
건물	교사		철콘스	1981	758.11	111,828	
	변소		시벽스	"	23.15	4,730	
	사택		"	"	33.00	5,207	
공작물	5종					13,196	
계					11,987.26	193,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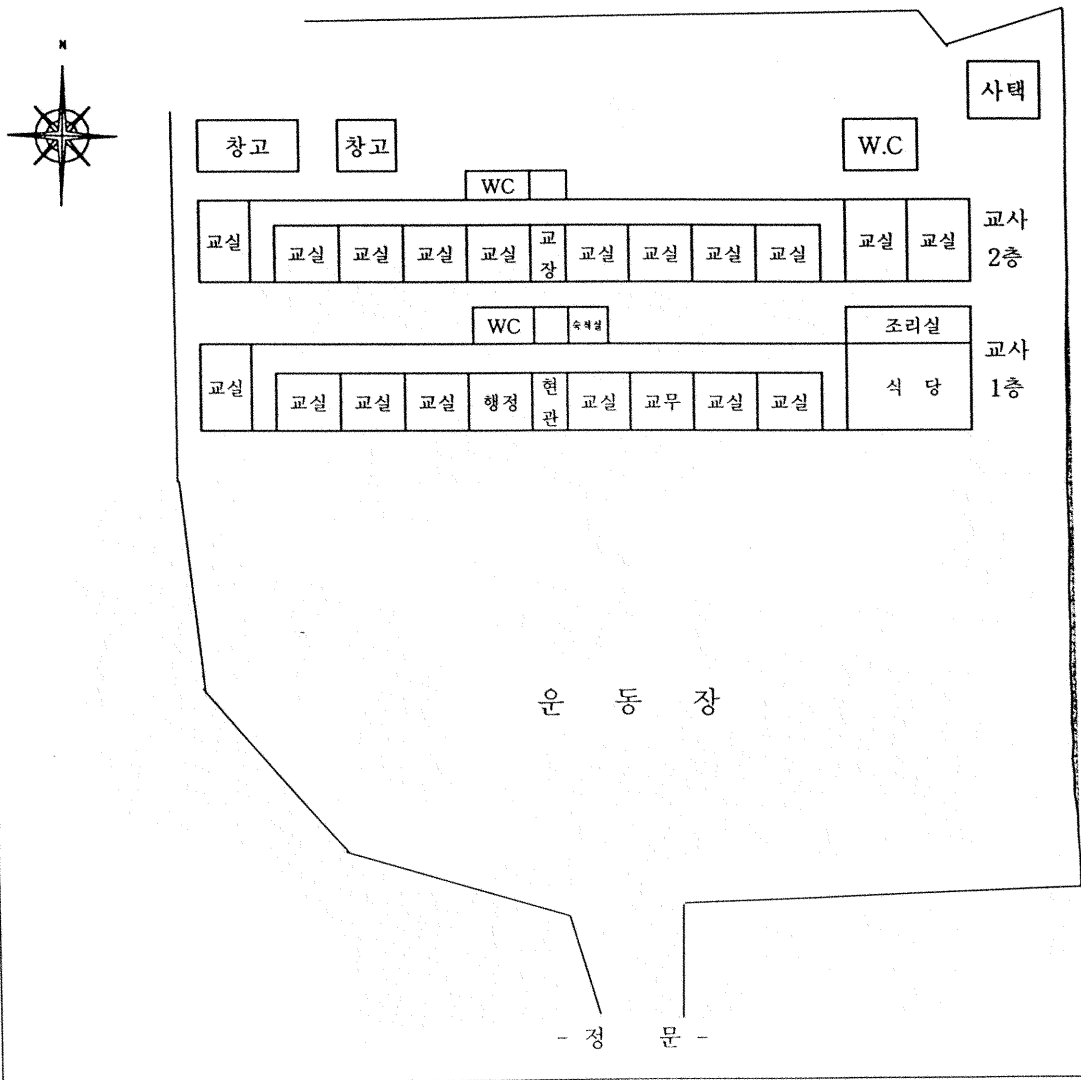
(구) 문의초 구룡분교 임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처분금액 (천원)	사유
잡종재산 (폐교재산)	청원군 문의면 상장리	산46-1	임야	96,570	93,769	교육환경개선 재원 확보



송학중 건물 처분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적(m ²)	금액(천원)	사 유
교 실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철콘슬	2,225.17	276,942	노후건물 철거



(별첨 3)

(제126회 임시회)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3. 2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01년 1월 29일(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1월 30일)

○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3월 2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이주원)

가. 개정사유

“충북교육비전 21”에서 밝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의 일환으로 학생부문의 시상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학생부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함

나. 주요골자

- 시상부문중 학생부문 삭제(안 제2조)
- 수상후보자를 12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안 제8조의2 제2항)
-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출시한을 삭제(안 제8조 제6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복학생상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시상 부문 중 학생시상 부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간의 단재교육상 운영 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볼 때,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시상의 대외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대상자 추천 시기, 심사위원회에서의 수상후보자 추천 조항 등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3. 28.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충 

간사 이 상 

위원 김 광 

송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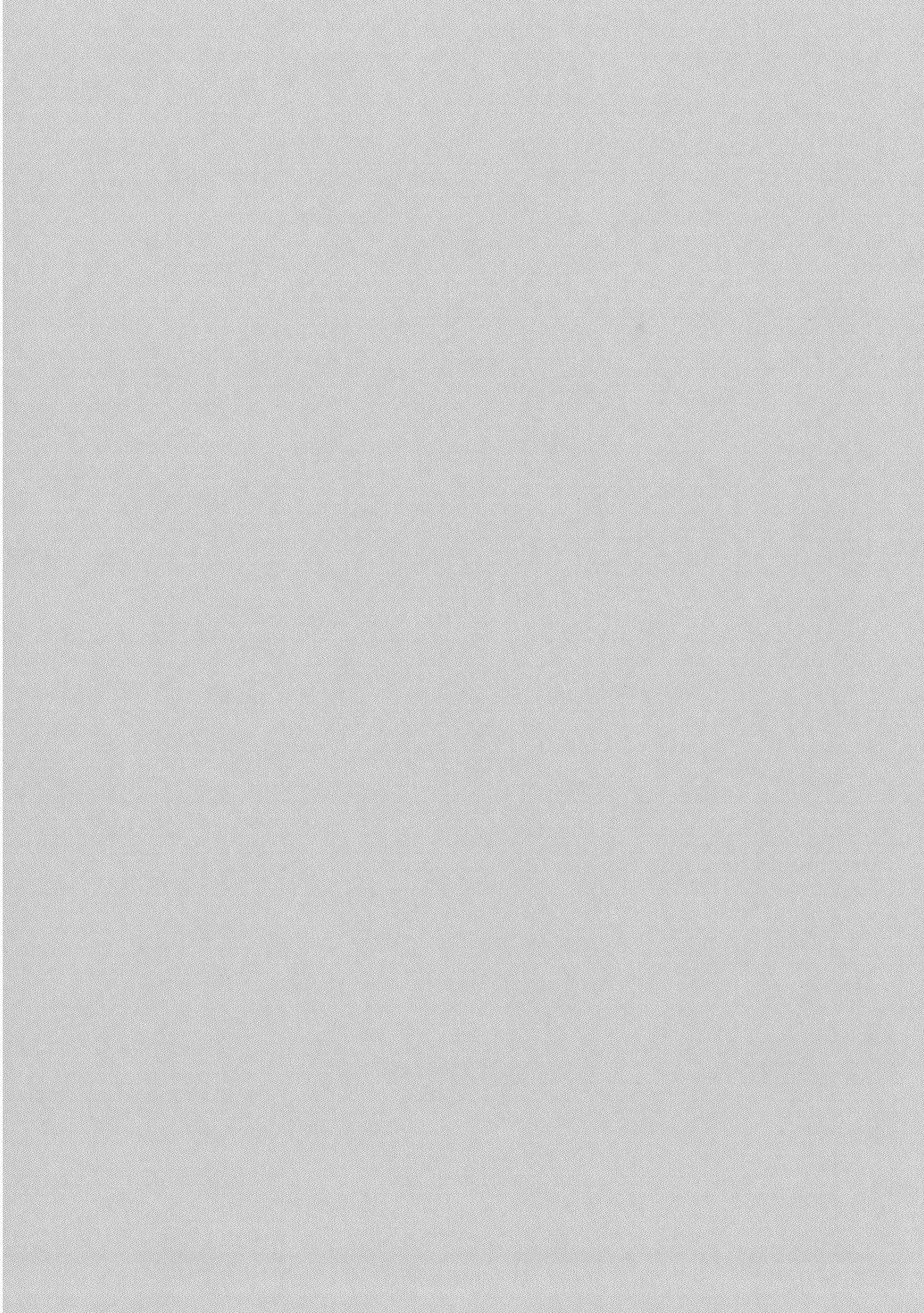
이기수 

조일환 

第12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2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47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6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11시 23분

議事日程 (제126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개회)

● 위원장 이충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제가 사회봉을 잡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24회의 임시회에서 상정했다가 계류 중인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 위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공식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조례안

이 먼저번에 저희들이 유보 결정을 부결로 봅니다, 가결로 봅니다?, 먼저번에 속기록 좀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이충원

속기록.....

● 조일환 위원

예, 가져와 보세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회의규칙 제3절 의안 및 동의에 보편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일 회기에는 상정할 수 없고, 그 다음 회기에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수정을 해서 본청에서 낸 조례가 아니라면 먼저번에 위원님

들이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의안을 가지고, 또 이것이 만약에 수정이 됐다면은 정식으로 다시 상정을 해야지 이것이 그냥 그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속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저는 이것이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어긋나는 조례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규정을 먼저 그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유보는 분명히 부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객관성 있게 보완해 주시오.” 해가지고 유보를 했노라 이 말여,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똑같은 의안을 가지고 또 한다면은, 물론, 똑같은 안이 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으로 수정의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절차가, 이것은 상정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상정을, 조례에. 상정을 하고 이것을 했어야죠. 뭐 동일안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저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 위원장 이충원

저도 지금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 속기록을 제가 읽어 볼테니 이것이 제대로.....

● 조일환 위원

의결된 사항, 유보한 사항만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이충원

글쎄 그래서 조일환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원 국장님이 “교사서부터 공로를 쌓아가지고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상을 타게 되는 거죠.” 조일환 위원님은 “글쎄,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님들이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기한 것이니까.....” “장내 소란” 그 다음에 위원장인 제가 “한 4,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했습니다. 제가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표결을 해 볼까요?” “결정된 사항대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일단 이번 상정한 의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나머지 안건은 점심 잡수시고 하시죠.” “좋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음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은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재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틀리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이번 상정한 이 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 조일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지금 저 조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

사국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먼저 유보 사항에 대한 법적 문제, 지금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얘기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낭독하신, 회의록을 지금 낭독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최종 유보로 결정했는데, 그럼 이것이 다시 상정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그 당시 모두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저희들이 위원 간담회실에서, 이 옆방에서, 이것은 10 몇 년 동안 너무 편중되게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다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유보를 하자, 그렇게 거기서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것은 먼저 의안 그대로죠, 철삭을 했습니까? 뭐 대조를 안해 봤습니다, 갑자기 주시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기회를 주시면은.....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썸.....

● 교육국장 이주원

기회를 주시면은.....

● 조일환 위원

아니 그걸,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번 저희들 의결한 그대로죠, 이게, 의안이? 수정을 해서 지금 주신 겁니까, 뭘 수정을 하셨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수정을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썸 그렇다면 위원님들은 수정해서 내달라고 그런 뜻으로 분명히 여기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은 그때 했어야지, 우리가 부당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발의로다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행청의 뜻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되니까 이 심사소위원회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서 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보로 해 놨다가 속개를 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유보라는 것은 뭉니까, 이것은 부결로 봐야 됩니다, 부결로.

그런데 이것을 상정도 안하고 그냥 여기서 소위원회를, 뭐 상정했다면 문제는 다름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스스로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저희들이 이 안을 심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저 위원장님 잠깐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공식 회의죠.

(“회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이나 하는 것을 간담회에서 하도록 한 10분 정회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그거 하기 전에 사무국 측에서 이것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좀 듣고, 잠깐 그렇게 하고서 정회하면 어떠세요?

● 김광수 위원

아니죠. 지금 동의 말에 동의.....

● 이기수 위원

거기서 얘기를 하죠.

● 조일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이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저희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를 제124회의 임시회에 상정했던 그 단재교육상조례안을 일단은 유보한 것으로 보고, 먼저 회기의 안건을 재 심의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최송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51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먼저 본 회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 기간을 오늘 하루로 하여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일환 위원

저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희들 의안을 주실 때에 단재교육원에 대한 조례는 안 주셨죠?

● 위원장 이충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 조일환 위원

안 나눠 주셨죠?

● 위원장 이충원

예,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아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쟁점됐던 것은 다 아시니까 거기에 적절한 어떤 수정하실 게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것을 의결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 위원장 이충원

아니 글썄, 예, 알았습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하신다니까, 그래서 또 하나 아까 속기록도 얘기가 나왔는데, 속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언론도 안 계시니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안은 다시 의안을 내셔서 부결된 걸로 봐야지 이것은 계류나 보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정회하지 않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지금 속기록에 올리는.....

● 조일환 위원

그럼 올려야죠, 올려 봐야죠.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속기록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일정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본 위원장이 정한 대로 결정해도 좋겠죠?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그러한 회의일정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예”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일환 위원께서 심도있게 하시자고 해서 우리 안건을 위원들한테 다시 배부를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서 하루 더 있다 하자는 안하고 둘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서 결정을 해서 갖고서 이제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안을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두 안 중에서 좋은 안 쪽으로 저는 따를 테니까 그 두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갖고서 회의일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일정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이따가 논의 중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재차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 조 의장께서는 대체적으로 이 안을 우선 의사일정을 지금 결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죠?

● 조일환 위원

글썄요, 뭐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이것을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받았을

때도 이 “소위원회” 하고서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걸 보고는 어떤 조례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안 나왔으니깐, 앞에도. 그런데 그것을 점심먹고 와서 그냥 이것을 회의를 하다 보면은 난상토론도 될 것 같고, 우리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유보한 이유를 알지 않느냐, 거기에 적절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아니면은 집행정도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까 한번 하고,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시고 하시려면 저희들이 의사일정 하루, 이를 연장하더라도 좀 이것이 기왕에 유보된 건데 상당히 그냥 원안대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안된다 말이죠, 먼저 그래서 유보시킨 건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조금 기간을.....

● **간사 이상일**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 **간사 이상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하루로 이 조례심사소위원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이기수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일환 위원님이 하루 가지고는 안되니까 회기를 연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연장하더라도.....

● **간사 이상일**

아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두 안을 가지고 저기 가부 간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가 26일, 27일, 28일, 3일간으로 회기결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조례소위원회를 마냥 2, 3일씩 연장하기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표결을 붙여가지고 위원장이 제시한 그 안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일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요,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안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그것이 부족해서 더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회기 내에서, 또는 회기 내에 불가능하게 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 이런 것만 그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시겠어요, 제가 설명이 잘못 됐나요?

●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 김광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을 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수 위원님이 거기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시다면 먼저 그 제의한 말씀을 취하하고 오늘 하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의를 하다가 만약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면은 내일로 한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 위원장 이충원

그런 취지입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런 취지죠?

● 위원장 이충원

예,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이 기간 내에서 하다가.....

● 김광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조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아니 뭐 위원님들 다수로 하시면.....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한다는 것을 그것을 취하하고 다시 제의를 하시란 말이죠.

● 위원장 이충원

아니, 취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인 것을 여쭙봐야겠네.....

● 김광수 위원

글쎄 그 단서를 달으라니까, 그것을 취하는 얘기를.....

(관계관 석에서 “수정제의입니다.”하고 말함)

수정제의를 하는 거지.

● 위원장 이충원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금일 하루로, 그러니까 회기를 결정하되, 심의 도중에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침삭, 또는 논의가 있어서 그 회기 내에 안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이상일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오늘 하루로 회기결정을 해서 하루에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은 결정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오늘 끝낼 수가 없다면 그때 우리 합의로다가 차수 변경을 하든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미리부터 그것을 회기를 애매모호하게 정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 김광수 위원

차수 변경을 하자 이런 얘기죠?

● **간사 이상일**

그것은 이따 토의 끝에 도저히 오늘 밤 10시가 됐는데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맞아 할 때, 그때는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회기결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애매하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저희가 확정된 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그것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합의를, 결론을 못 내렸을 때 그때 가서 연기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어떻게 다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한 일정을 여기서 임의로 사전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선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1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체교육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던 건데, 먼저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집행청의 답변이 좀 미진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저희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겠죠?

(조일환위원 회의장 나감)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이충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실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단체상 수상대상자 심사를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적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그 잘못된 것을 해서 회의에 좀 누를 끼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꼭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조례 제5조의 위원회 구성과 제8조에 추천 및 심사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시상 분야별로, 시상 분야별로 각계의 전문

인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8조6항의 그 추천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그 개정안을, 개정안을 9월 말에서 10월 말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끝나셨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전에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 이 말씀이죠?

● 교육국장 이주원

그 조례 자체는, 조례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고, 그 운영에 묘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에 맞는, 운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구성관계에서는.

● 위원장 이충원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질의는 먼저 저희가 먼저 회기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휴회를 해 갖고서 협의를 하셔 갖고서 그러면 이 안건을 무수정 다시 통과할 것이냐, 또 그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지 하면 조율을 해 갖고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기사 또 뭐 내용 자체는 먼저 너무 상세하게 우리가 질의했고,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든지 하면 먼저 얘기했던 사항을 휴회하고, 검토하고 하셔 갖고서.....

● 위원장 이충원

김광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휴회를 하고서.....

● 김광수 위원

아니 저는 먼저번 회기에서 교육국장님 말씀이 인사위원회에서 단재교육상을 심의한다 라고 했던 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 이거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잘못했다, 이제 말하자면 심사위원은 그 분야별로 전문위원으로서 구성을 한다.....

● 교육국장 이주원

앞으로, 그 먼저번에는요.....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중에 그렇게 돼 있는 항목은 없죠?

● 교육국장 이주원

있죠, 다, 있어요, 지금. 조례 중에 그런 항목이 다 들어 있어요.

● 김광수 위원

그런 항목이 들어 있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에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은 각 분야 별로 두 사람씩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것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항목을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을 발체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같이. 이 안 하고 같이 내 줘야지 그것을 알지, 그 안을 같이 안 주고서 그냥 이것만 내 주면 되겠어요? 자료를 그것을 내 줘야지.

●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이 먼저번 124회 임시회 때 그 개정안 속에 그런 게 다 들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단체교육상 조례를 먼저번에 받았나?

● 이기수 위원

받았는데, 먼저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르죠.

● 교육국장 이주원

다 드린 걸로 생각.....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아니, 거기에 분명히 복수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주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에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말하자면 거론이 됐었던 거죠, 그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체교육상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8조제2항제2호에 12인이라고 하는 것을 6인으로 개정하는 안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단체교육상이 학생부문을 포함해서 여섯 개 분야에서 열두 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 김광수 위원

여섯 개 분야에서.....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여섯 개 분야에서 1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학생부문이 빠지기 때문에 교원이나 일반인 부문에서 3개 분야에 여섯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 이기수 위원

그 안에 내포돼 있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그 안에 내포돼 있는 내용입니다.

● 김광수 위원

내내 그게 그런 얘기군 그러니까. 6개 분야에서 열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다 이거지?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6개 분야에서 열두 명 추천하던 것을 이제 3개 분야에서 여섯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십니까?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이충원

아니 글썄.....

● 김광수 위원

아까 말하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번 그 회기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여기에 하나도, 말하자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충원

예, 맞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 송진하 위원

정회를 하고서 협의를 한번 해 봅시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 위원님.

● 간사 이상일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실 게 아니라고요, 잠시 휴회 한다고 하시죠?

● 간사 이상일

잠시 휴회 하고서요.....

● 위원장 이충원

잠시 그러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충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몇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사위원회 구성, 추천 대상자, 그 다음에 배수 추천 문제, 추천시기 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오고갔습니다.

따라서, 죄송스럽지만 본 안은 부결하기

[제126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보다 좀 좋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다시 수고스러우시지만 상정해서 해 주시고, 미안스럽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번 안건은 부결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논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소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4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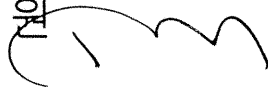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4. .

위원장

이충원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2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3. 26. (월) 11:3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단재교육상조례증개정조례안	

